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유산전담관과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을 지정·배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9796호, 2023. 10. 31. 일부개정, 2024. 11. 1.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문화유산전담관과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문화유산전담관 등(안 제2조의2 신설)

- 문화유산전담관은 3년 이상의 문화유산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진 자로 지정하며, 관할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시책의 수립과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은

문화유산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자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나. 역사문화환경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안 제7조의 3 신설)

- 시·도지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되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거치도록 함
-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역사문화환경의 보호 또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관람 지원시설 등의 설치·정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경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이에 따른 주택수리 등의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을 정함
- 국가유산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7. 24. ~ 9.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문화유산전담관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전담관(이하 “문화유산전담관”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3년 이상의 문화유산 관련 업무 경력(부서의 장이 되기 전의 업무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② 문화유산전담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2. 관할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 계획의 수립과 추진
3. 관할 지역 문화유산의 조사·연구사업 계획의 수립과 추진
4.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이하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와 감독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은 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2. 문화유산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및 별표2의3에 따른 학예일반 직류 전공의 석사 이상 학위가 있는 공무원

④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구역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
 2. 관할 구역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의 추진
 3. 관할 구역 문화유산의 조사·연구사업 추진
- ⑤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전통문화 전문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7조의3(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절차 등) ① 시·도지사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2. 사업 필요성 및 개요
3. 지원 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현황과 특성
4.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 5.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결과
- 6. 사업비용 및 재원 조달 방안
- 7. 그 밖에 시·도지사가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시·도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가유산 관람 지원시설 등의 설치·정비
-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경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이에 따른 주택수리 등의 주거환경 개선 등
- 3. 상하수도,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등
-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 1. 역사문화환경의 보호 또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 2.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의 실효성이 클 것

⑤ 국가유산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시

·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조의2(문화유산전담관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전담관(이하 “문화유산전담관”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3년 이상의 문화유산 관련 업무 경력(부서의 장이 되기 전의 업무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② 문화유산전담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2. 관할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 계획의 수립과 추진		
		3. 관할 지역 문화유산의 조사·연구사업 계획의 수립과 추진		
		4.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이하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이라 한		

다)에 대한 지도와 감독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은 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2. 문화유산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및 별표2의3에 따른 학예일반 직류 전공의 석사 이상 학위가 있는 공무원

④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구역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

2. 관할 구역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의 추진

3. 관할 구역 문화유산의 조사

<신 설>

· 연구사업 추진

⑤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통문화 전문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7조의3(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절차 등) ① 시·도지사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2. 사업 필요성 및 개요

3. 지원 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현황과 특성

4.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5.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결과

6. 사업비용 및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시·도지사가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

취하려는 경우에는 시·도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 관람 지원시설 등의 설치·정비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경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이에 따른 주택수리 등의 주거환경 개선 등

3. 상하수도,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등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역사문화환경의 보호 또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
을 것

2.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의 실효성이 클 것

⑤ 국가유산청장은 주민지원사
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
으며,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지원사
업 계획의 수립·시행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4903